

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2002. 12. 20

총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11. 21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11. 22
- 라. 상정일자 : 2002. 12. 20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)

### 가. 개정이유
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일부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%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고, 그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

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할 수 있도록 제3조 일부개정 및 제4항 신설(안 제3조제2항,제3항,제4항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2002. 4. 27일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임.
- 주요 검토내용
  - 개정안 제3조제2항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50%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고,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액과 별도의 계좌를 운용토록 하였으며
  - 같은조 제3항은 장기에치금은 서산시 지정금고에 예치토록 하고
  - 같은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 역시 지정금고에서 관리토록 하고, 사용잔액과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 운용토록 한 것으로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기금운용 및 관리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및 소수의견 : 없었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26호
의결(보고)	2002. . .
년 월 일	(제 회)

**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2. 11. 21.

#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02. . .  
제 출 자 서산시장

## 1. 개정이유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%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고, 그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사용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 할수 있도록 제3조 일부개정 및 제4항 신설(안 제3조제2항,제3항,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법령 :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

나. 예 산 근 거 : 필요없음.

다. 관련사업계획서 : 없음.

라. 입법예고 결과의견 : 의견제출 없음.

마. 기 타
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중 개정령 : 2002. 4. 27

- 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 표준(안) 통보 : 충남도(차수13900-655) 2002. 5. 23

##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

**제3조중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② 시장은 누계잔액(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)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할 기금액(이하"장기예치금액"이라 한다)과 당해년도사용기금액(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)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장기예치금액은 서산시지정금고(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

④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하며,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(50~70 범위내에서 조성)을 이자율이 높은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 시장은 누계잔액(매년 적립된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)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할 기금액(이하“장기예치금액”이라 한다)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(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)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장기예치금액은 서산시 지정금고(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</p> <p>④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하며,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